

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 제고 위한 ‘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’ 시행

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
2019.2.28.

행정안전부가 민간 분야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쉽게 지진 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‘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’를 3월부터 시행한다.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, 2017년 10월 개정된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에 근거를 두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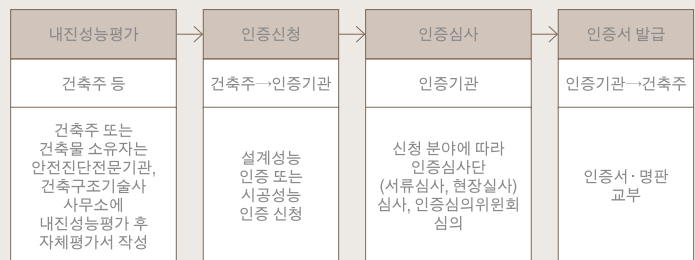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‘설계인증’, ‘시공인증’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, 설계인증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*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 부여하며,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시공인증을 받을 수 있다.

아울러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, 행정안전부는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을 통해 지원한다. 지원 규모는 약 22.5억 원으로, 건축물 600개소에 대해 성능평가비(300~1,000만 원)의 60%, 인증수수료(480~660만 원)의 30%를 지원할 계획이다.

내진 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, 보험료 할인, 건폐율·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.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.

인증은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, 인증기관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,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.
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



자료: 행정안전부(2019), “지진안전 시설물,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!”, 2월 28일자 보도자료.

* 병원, 어린이집, 노인 복지시설, 단독주택, 숙박시설, 학교 등